

조사신청 및 현장확인 절차

신청 <희망업체>

- 대응능력 조사를 희망하는 업체는 조사 신청서류를 관할 해양경찰서에 제출
 - 제출서류: ①조사신청서, ②대응능력 조사자료, ③정보수집 이용동의서
- ☞ 양식문의: 관할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 ☞ 신청기한: '20.8.1~'20.9.30

서류검토 <해양경찰서>

- 서류접수 및 검토
- 대응능력조사 신청업체에 현장조사 일정 통보

현장실사 <해양경찰서>

- 제출된 서류의 사실여부 및 관리·운영 상태 현장 확인
 - 오염물질 배출방지 및 방제조치별 업체 대응능력 검증

운영 <해양경찰서>

- 사고형태·규모별 배출방지·방제업체 선정 및 동원
- 방제의무자에게 업체정보 제공
- 업체별 대응능력 변동사항 관리

활용

- 해양오염사고로 방제의무자에게 방제조치명령서 발행 시 사전조사된 민간방제세력 목록을 제공하여 방제 의무자가 신속하게 방제조치를 이행하도록 활용
- 해양경찰서에서 긴급방제조치를 위해 민간방제세력 동원업무에 활용

"민간방제세력 대응능력 조사신청" 관련 문의를 관할 해양경찰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역량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우수한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해양경찰서 연락처

지역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
속초	033-634-2291	목포	061-241-2291
동해	033-741-2591	부안	063-928-2291
울진	054-502-2291	군산	063-539-2691
포항	054-750-2591	보령	041-402-2291
울산	052-230-2391	태안	041-950-2291
부산	051-664-2491	평택	031-8046-2291
창원	055-981-2291	인천	032-650-2291
통영	055-647-2391	제주	064-766-2691
여수	061-840-2294	서귀포	064-793-2491
완도	061-550-2391		

신속하고 확실한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해 내딛는 또 한 걸음

민간방제세력 대응능력 사전조사

"역량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민간방제세력 대응능력 사전조사란?

“민간방제세력”이란?

- 해양오염방제, 잔존류 이적, 파공봉쇄, 비상예인, 선체인양, 타선소화 등 해양사고 시 환경위해 방지를 위해 긴급방제에 동원 가능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업체를 말합니다.

“대응능력 사전조사”란?

-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대응능력을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 분야

오염물질 배출방지 조치

- 선박의 손상부위 긴급수리
- 침수·배출 방지
- 에어벤트 봉쇄
- 적재유 이적
- 선체예인
- 선체인양

오염물질 방제조치

- 오염물질 확산방지
- 오염물질 회수·제거
- 수거물질 안전처리

추진 배경

- 해양사고 시 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방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대응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동원되어 사고처리가 지연되고 오염 피해가 확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8.9.10. 대○호 침수사고)



선박의 긴급수리(파공봉쇄)·예인·적재유이적·선체인양 및 오염물질 방제조치 등이 필요한 긴급상황 발생 시 동원할 민간업체의 사고대응능력을 사전 조사하여 적합한 업체를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항목

- 오염물질 배출방지 및 방제 조치별 민간방제세력의 대응능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작업 가능위치, 기술, 전문장비 보유 등 현황을 조사합니다.

긴급수리(파공봉쇄)

- 파손부위 또는 에어벤트 봉쇄기술, 수중작업 방식, 작업가능수심 등



적재유 이적

- 이적가능 유종, 동점도, 잠수방식, 작업가능 수심 등



선체예인

- 항행구역, 예항력 등



선체인양

- 최대인양능력, 수중 작업방식, 작업수심, 과거경험 등



오염물질 방제

- 방제선단규모, 유회수기 용량, 이송펌프용량, 오일펜스 보유량 등



과거경험

- 최근 5년 이내 실적

소재지(정박지)

- 사고 현장까지의 이동 소요시간을 고려할 소재지(항만)

※ 배출방지·방제 조치별 중복 신청 가능